[별지 제4호]

재 산 목 록

※ 먼저, 다음 재산목록 요약표에 해당재산이 있는지 √하고, 「□ 있음」에 √한 경우에는 아래 해당 항목에서 자세히 기재바랍니다. 이 양식을 파일형태로 이용할 경우 아래 표 중 에「□ 있음」에 √한 부분만 출력하여 제출하여도 됩니다. 따라서 모두 「□ 없음」에 √한 경우에는 아래 표 다음 부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(실제로는 재산 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, '지급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~ 현재까지 재산 처분 여부'의 '없음'에 √해 놓고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소명자료를 뒷부분에 편철해놓는 경우가 있는데, 이와 같이 재산목록 요약표와 소명자료 또는 진술서의 기재내용이 서로 불일치한 경우에는 허위진술 내지 불성실한 신청으로 간주되어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).

재산목록 요약표

1. 현금	□있음 <u>√없음</u>	6. 매출금	□있음 √없음	11. 지급불가능 시점의 1년 이 전부터 현재까지	
2. 예금	<u>√있음</u> □없음	7. 퇴직금	□있음 <u>√없음</u>	재산 처분 여부	
				- 12. 최근 2년간	□있음 √없음
3. 보험	<u>√있음</u> □없음	8. 부동산	□있음 √없음	받은 임치보증금	
4.임차보증금	□있음 √없음	9.자동차·오토바이	□있음 √없음	 13.이혼재산분할	□있음 √없음
5. 대여금	□있음 √없음	10. 기타 재산(주식, 특허권, 귀금속 등)	□있음 √없음	 14. 상속재산	□있음 √없음

1. **현금** : 금액 (0원)

2. 예금

금융기관명(NH농협은행) 계좌번호(31200915***51) 잔고(294원)

금융기관명(국민은행) 계좌번호(2442102***01) 잔고(5원)

금융기관명(국민은행) 계좌번호(593501011**24) 잔고(5,018원)

금융기관명(기업은행) 계좌번호(065080406***19) 잔고(747원)

금융기관명(부산은행) 계좌번호(11222917***04) 잔고 (2.066원)

금융기관명(카카오뱅크) 계좌번호(33331695***06) 잔고 (1원)

금융기관명(새마을금고) 계좌번호(90032909***23) 잔고 (330,752원)

금융기관명(우체국) 계좌번호(202127020***81) 잔고 (10원)

금융기관명(KB증권) 계좌번호(303017***01) 잔고(36원)

금융기관	금융기관명(삼성증권) 계좌번호(40075***01) 잔고 (60원)							
금융기관	ŀ명(유안타 증 권	면) 계조	·번호(702710***	92) 잔고	(11,572원)			
금융기관	·명(하니증권) 계좌반	년호(311876***10)) 잔고(3,089원)			
금융기관	l명(하나 증 권) 계좌반	년호(312133***10)) 잔고(32원)			
☆ 은행	이외의 금융기	관에 대	한 것도 포함합니	니다.				
금융 부하 금거	거래일로부터 여 주십시오(공	과거 1년 당과금, 통 출, 가족	간의 입출금이 : 통신료, 카드사용	기재된 통장 +, 급여이체	사본 또는 예금 등이 기재된 통	본을 포함)와 최종 금거래내역서를 첨 분장 사본 또는 예 단 통장 사본 또는		
3. 보험(생명보험 등)							
보험회사	l명(DB손해보험	주식회시	h)증권번호(28909	01210810)해역	약환급금(1,639,6	¼1원)-실손보험		
보험회사	명()	증권번호() 해약환급금	긐 (원)		
보험회사	명()	증권번호() 해약환급금	금 (원)		
						기재하여 주십시오.		
그러 자 ·	한 보험가입내 단체보험, 주말	역조회에 발휴일상하	기재된 생명보	험(손해보험 해지 · 실효	, 자동차보험, 호·유지 여부 및	첨부하여 주시고, 운전자보험, 여행 및 예상해약환급금		
4. 임차5	년 증 금							
임차 물 건	<u> </u>), 임치	차보증금 (원),	반환예상금 (원)		
☆ 반환예상금란에는 채무자가 파산신청일을 기준으로 임대인에게 임차물건을 명도할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반환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예상액을 기재하여 주십시오.								
						부하여 주십시오.		
☆ 상가	임대차의 경우	에는 권리	리금이 있으면 반	·드시 권리금	액수를 기재해	주시기 바랍니다.		
5. 대여금	· 구상금 ·	손해배성	상금·계금 등					
채무자망	형() Ā	배권 금 액 (원)	회수가능금액	(원)		
채무자명	!() 치	H권금액 (원)	회수가능금액	(원)		
				•		상금, 손해배상금, 하시기 바랍니다.		
6. 매출	금(개인사업을	경영한	! 사실이 있 는	분은 현재	대까지 회수하	지 못한 매출금		
채권)								
채무자	ġ() Ā	H권금액 (원)	회수가능금액	(원)		

: 2025. 05. 15 11: 46

: : 2024.10.02.18:22 :

채무지명()	채권금액 (원)	회수가능금액 (원)	
7. 퇴직금						
근무처명()	퇴직금예	상액 (원)	
는 그 취지)을 기지	대하여 퇴직금	주십시오. 만일 퇴직금	채권을 딛	금예상액(퇴직금이 없는 경 남보로 하여 돈을 차용하였기 다는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를	기 때	
8. 부동산(토지와 건물	물)					
종류(토지·건물)	소재계	۲ ()	
시 가(원) 등기된 담보권의	의 피담보치	해권 잔액(원)	
종류(토지 ∙건물)	소재계	٦ ()	
시 가(원) 등기된 담보권의	의 피담보치	해권 잔액(원)	
☆ 저당권 등 등기된 딤 의 증명자료를 첨부 할 때는 가압류나 Q	\보권에 하여 주 <u>\ 류임을</u> 에는 경	십시오(가압류나 압류는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 매절차의 진행상태를 알	권자가 작 등기된 등 <u> </u> 다)	부하여 수십시오. 성한 피담보채권의 잔액증명/ <u>참보권이 아니므로 그 가액을</u>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.	_	
차종 및 연식() 등록번호()	시가 (원)	
등록된 담보권의 피	담보채	권 잔액(원)		
☆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.						
10. 기타 재산적 가치	가 있는	는 중요 재산권(주식,	회원권,	특허권, 귀금속, 미술품	등)	
품목명()	J	시 가 (원)	
품목명()	J	시가 (원)	
분한 1,000만원 이상	날의 지	<u>배산</u> (다만, 여러 재선	산을 처분	전부터 현재까지 사이에 분한 경우 그 합계액이 1,000만 원 미만이라도	1,0	

: : 2024.10.02.18:22 : : 2025.05.15 11:46

☆ 처분의 시기, 대가 및 대가의 사용처를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여기 서 말하는 재산의 처분에는 보험의 해약, 정기예금 등의 해약, 퇴직에 따른 퇴직금수령 등도 포함합니다. 주거이전에 따른 임차보증금의 수령에 관하여는 다음의 12항에 기재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☆ 특히 부동산이나 하나의 재산의 가액이 1,0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시기와 대가를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, 계약서사본, 영수증사본 등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(경매로 처분된 경우에는 배당표 및 사건별수불내역서를 제출하여 주 십시오).
- 12. 최근 2년 이내에 주거이전에 따른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사실
 - ☆ 임차물건, 임대차계약상 임차보증금의 액수와 실제로 수령한 임차보증금의 액수, 수령 한 임차보증금의 사용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13. 최근 2년 이내에 이혼에 따라 재산분여(할)한 사실

 - ☆ 분여한 재산과 그 시기를 기재하여 주십시오.
 - ☆ 재산분할. 위자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.
 - ① 이혼에 따라 배우자에게 분여(할)한 모든 재산의 내역
 - ② 협의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, 양육비부담조서 제출
 - ③ 재판상이혼의 경우, 판결서, 조정조서 등 재판서 및 확정증명 제출
 - ※ 이혼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는 다음에 따라 제출
 - ① 시, 구, 읍(면) 등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경우 :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
 - ② 최근 2년 이내에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로 아직 시, 구, 읍(면) 등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
 - : 재판상 이혼과 관련한 재판서의 등본(조정·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서 등본) 및 확정증명을 제출
 - ③ 외국에서 유효한 신분행위를 하여 해당 국가의 증서 등본이 발행되었으나 아직 한국 시, 구, 읍(면) 등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
 - : 신분관계에 관한 외국의 증서 등본

: : 2024.10.02.18:22 : : : 2025.05.15 11:46

14. 친족의 사망에 따라 상속한 사실

년 월 일 친족____의 사망에 의한 상속

상속상황

- 상속재산이 전혀 없었음
- 신청인의 상속포기 또는 상속재산 분할에 의하여 다른 상속인이 모두 취득하였음
- © 신청인이 전부 또는 일부를 상속하였음

주된 상속재산과 그 처분의 경과

☆ ⓒ 또는 ⓒ항을 선택한 분은 주된 상속재산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☆ ○항을 선택한 분은 다른 상속인이 주된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를 기재하여 주십시오.

열림용